

2026년부터 환경정보장제도^①가 확대되어 모든 전기·전자제품^②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사업장은 폐전기·전자제품 회수·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. 관련하여 안정적 제도 안착 및 시행을 유도하고자 신규 편입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

① '환경정보장제'란?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^①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^②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^③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.

※ 근거: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")

② 전기전자제품이란?

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, 이동,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·기구를 말합니다. (단, 직류 1,500V 이하 또는 교류 1,000V 이하)

1. 환경정보장제 의무 대상 및 이행 방법

- 「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법 개정 사항 등

구분		내용	
① 주요 법 개정 사항	현행	개정(2026.1.1.~)	
	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3 50개 품목	모든 전기·전자제품 ※ [제외품목] 군수품 및 국가안보물품, 대형고정설비 및 산업기기, 감염성이 있는 의료기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·전자제품	
② 의무대상	제조업자	전기·전자제품 매출액 10억 이상(의무이행 전년도 기준)	
	수입업자	전기·전자제품 수입액 3억 이상(의무이행 전년도 기준)	
	판매업자	전기·전자제품 전년도 매출액 50억 이상	
③ 의무이행방법	제조수입업자	재활용의무	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인계
	판매업자	회수의무	판매한 제품군의 폐전기·폐전자 제품을 스스로 회수
	공통	사전예방의무	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(매출액/수입액 규모 무관) *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표
	공통	공제조합	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이 회수의무 대행

※ 판매업자의 회수·인계의무 제외 대상

-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·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출자한 경우
- ② 전기·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·전자제품을 전량 매입하는 경우



2. 재활용 의무이행 절차

의무 이행 연도 (2026)	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(매년 1월 31일)	○재활용의무생산자(제조·수입업자) 또는 공제조합→공단
	전년도 출고·수입실적서 (매년 4월 15일)	○재활용의무생산자(제조·수입업자)→공단 (※ 공제조합 대행 제출 불가, 공단으로 직접 제출) ○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
	회수·재활용의무 이행	○재활용의무생산자(제조·수입업자) 스스로 이행 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공동 이행
의무 이행 다음 연도 (2027)	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(다음연도 4월 30일)	○재활용의무생산자(제조·수입업자) 또는 공제조합→공단
	재활용부과금 고지/납부 (다음연도 8월 31일)	○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의무생산자(제조·수입업자) 또는 공제조합

3. 의무대상 법정 제출서류(www.EcoAS.or.kr 제출)

구분		기한	서식
전기·전자 제품 회수·재활용	제조·수입업자	1월 31일	○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)
		4월 15일	○전년도 출고·수입실적서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)
		4월 30일	○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	판매업자	1월 31일	○회수의무이행계획서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)
		4월 15일	○전년도 매입·판매실적서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)
		4월 30일	○전년도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)

4. 설명회 개요 및 참석 신청

구분	내용	
일시	2025. 11. 5.(수), 14:00~17:00	
장소	건설공제조합 본사 2층 CG아트홀(서울 남구 언주로 711) ※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(약 400m)	 찾아오시는 길
참석대상	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·판매사 및 환경정보장제 업무 담당자	
세부일정	관련 법 개정사항, 환경정보장제 업무 설명 및 질의응답, 공제조합 안내 등 · (13:30~14:00) 참석자 접수, 설명회 자료 배포 등 · (14:00~16:30) 환경정보장제 안내, 공제조합 소개 및 가입안내, 질의응답 · (16:30~17:00) 업체별 1:1 상담(희망하는 경우만)	
참석신청	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제출 ※ 신청마감: 11. 4.(화)	 참석신청

※ 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경우, 홈페이지(www.ecoas.or.kr)를 통해 공지합니다.

5. 안내사항

- 설명회 자료는 EcoAs홈페이지(www.ecoas.or.kr) 고객마당>자료실에 게시될 예정(11/4)이며, 당일 현장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.
- 설명회 종료 후 업체별 1:1 상담 시간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며,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참석신청시 상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설명회 장소는 생수만 반입이 가능합니다.
- 별도의 주차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
6. 문의처: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2부

☎ 02-3153-0593, 0582, 0584, 0592